

PART 1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 01 부당청구 신고대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부당청구행위 일체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제공한 일수·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수급자와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용 청구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거나,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 입소일수를 늘리거나, 외박일자에 시설급여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청구 행위 일체

0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내방·우편: 전국 운영센터(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내방 또는 우편 송부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실명/익명 신고하기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앱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신고 → 실명/익명 신고하기
  - 공단 직원 출장방문 접수(내방·우편·인터넷·모바일앱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익명신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앱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고상담 전용전화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경기/인천	031-230-7914
본부	033-811-2008		

0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변경**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절차 등 관련내용을 신고인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1차 안내합니다.
  - 인터넷·모바일앱 신고: 신고접수 담당자가 답변 등록
  - 그 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접수 및 업무처리 안내문' 우편송부
- 접수된 신고 건은 「부당청구 신고건처리위원회」에서 조사방법(현지조사, 현지확인 심사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징수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04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관련)〉을 근거로 신고인 유형을 세 가지(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그 밖의 신고인)로 구분합니다.
- 구분된 신고인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그 밖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익명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05

신고인 2명이 공동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했습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포상금은 공동신고인 중 합의된 대표신고인 1인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 되면 이에 대한 통지서는 공동신고인 모두에게 각각 송부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공동신고인들이 합의하여 대표신고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신고인 1인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